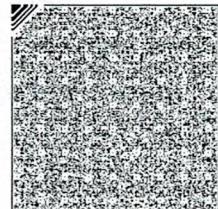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 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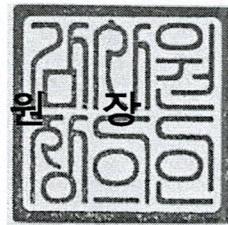
수신 임재민 귀하 (우024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6길 8 (회기동))  
(경유)

제목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통보 (제2020-공익-099호)

- 국민 다수의 공익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청구인 대표로 2020. 8. 13.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청구사항[분류번호: 2020-공익-099,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불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불임 :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1부. 끝.

감 사



부감사관

김문준

감사관

김홍철

감찰담당관

전결 2020.12.29.

심재곤

협조자

시행 감찰담당관-623

(2020. 12. 29.)

접수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 <http://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3187 팩스번호 02-2011-2679 / kmj2000@korea.kr / 비공개(6)

[붙임]

##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 1. 감사원장의 위법 · 부당 행위 여부 관련

#### 1-1. 월성1호기 감사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배제 여부

##### <청구 요지>

- 김남국 의원은 '20. 7. 29. 감사원의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월성1호기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제외되었다고 발언
- 실제로 감사원장이 본인의 의중대로 감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 차장을 배제하였는지 감사 필요

##### <검토 결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월성1호기 감사 처리에 필요한 문서에 정상적으로 결재하는 등 감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2.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여부

##### <청구 요지>

- 감사원장은 총선('20. 4. 15.) 직전 3일간(4.9/4.10/4.13)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돋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고 시도
- 「감사원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 <검토 결과>

감사원장은 국회 감사요구사항 등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심의하였을 뿐, 특정 정당을 돋기 위해 결론을 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 4월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위원회의는 3. 31. 감사위원회의 부의안이 완성된 후 4. 9. 첫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후 두 차례 속개한 것일 뿐 「감사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과 무관하며, 오히려 총선 전에 이미 감사 위원회의 부의안이 완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의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결과는, 「감사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가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장이 임의로 특정한 결론을 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3. 월성1호기 감사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

---

### <청구 요지>

- 박범계 의원은 '20. 7. 29. 감사원의 법사위 업무보고 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기사가 총선기간 중 특정 언론에 연쇄 보도된 것은 감사원장이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것 아니냐고 질의
  - 만약 감사원장이 감사 진행상황 등을 언론에 누설하였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
- 

### <검토 결과>

감사원장은 감사 진행상황을 개인적으로 언론에 누설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 기간(4. 2~4. 15.) 중 감사원과 관계자 발 보도는 감사원(대변인실)이 통상적인 공보 프로세스에 따라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보도 내용도 「형법」 제127조에서 처벌하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의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4.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척 규정 위반 여부

##### <청구 요지>

- 감사원장의 동서 중 한 명이 원자력연구원에 재직하고 있고, 한 명은 [REDACTED]으로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
- 따라서 월성1호기 감사의 경우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에서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직접 직권심리를 주도하는 등으로 「감사원법」을 위반

##### <검토 결과>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척 사유를 ①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감사원 외에서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직업상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1호(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의 제척사유를 명시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준용 됩니다.

그런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의 경우, 원자력연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이 없어 감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만큼 그 재직자는 더더욱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 혹은 ‘관여’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언론사 논설주간이 위 감사의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 혹은 ‘관여’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위 사람들이 감사원장의 친족(동서)이라는 것이 감사원장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5. 대선 지지율(41%)을 거론하며 조기폐쇄의 부당성 단정·강요 여부

### <청구 요지>

-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41%)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단정
- 이처럼 감사원장이 자신의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의 공정의무 등에 위반된 행위

### <검토 결과>

감사원장이 '20. 4. 9.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해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1호기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다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것뿐이며 전후 맥락 등 고려 시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거나 자신의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직권심리 당시 위 내용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에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보장(제2조)하고,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제8조)한 것은 특히 감사결과 심의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감사위원회의 및 직권심리 과정에 참여한 감사원장 등 감사위원은 독립적이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6. 친원전 논리로 직권심리 회의 발언 70~80% 주도 여부

### <청구 요지>

-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시('20. 4. 9.) 친원전 쪽의 일방적 논리<sup>\*</sup>로 발언의 70~80%를 끌어갔다고 보도
  - \* 대통령이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감사원장이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신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하나?'고 발언
- 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한 것으로서 공정 의무, 중립의무에 위반되고, 감사에도 유무형의 지시·방침으로 작용

### <검토 결과>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감사요구 사항 등 제기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일 뿐, 친원전 일방의 논리로 이끌어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구인이 친원전 발언으로 거론한 사항 중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하냐?’라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신한 것’이라는 발언은 있었지만, 이는 조기폐쇄 결정 주체가 한수원인데,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백 전 장관에게 묻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일 뿐 강요나 지시와는 무관합니다.

더욱이 감사보고서 부의안은 직권심리 이전에 이미 완성되고, 감사결과는 직권심리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수결로 의결되므로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감사반에 특정한 지침을 주거나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7. 공공기관감사국장 전보 인사의 적정 여부

### <청구 요지>

- 감사원장은 '20. 4. 13. 부의안건 의결 보류 이후인 4. 20. 보임한지 4개월도 안 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
- 그 후 감사관도 보강되고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감사원장이 자신의 의중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였을 가능성 농후

### <검토 결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의 전보 권한은 「감사원법」 제17조의2 제5항, 「고위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등 관계 규정에도 고위감사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 4. 20. ○○○ 전 심의실장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전보한 것은 '20. 3. 23. 감사교육원장이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발생한 인사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조치의 일환이며, 감사원장에게 법령상 부여된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헌법」(제97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이고,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동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권한 행사에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1-8. 감사위원 제청 거부가 성실의무 위반인지 여부

### <청구 요지>

- 감사원장은 '20. 4월 이준호 감사위원 퇴임 후 대통령의 요청(2번)에도 불구하고 후임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 중
- 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제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 <검토 결과>

「헌법」 제98조 제3항 및 「감사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 되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감사원장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하여 임명권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2. 감사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 관련

### 2-1. 경제성에 초점을 둔 감사의 적정 여부

#### <청구 요지>

-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데, 감사원은 경제성만 집중 감사하고 안전성, 주민수용성 및 정책적 목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불법 논란을 촉발했던 '09년 이전 한수원의 선투자와 왜곡된 경제성 평가도 의도적으로 감사에서 배제

#### <검토 결과>

국회감사요구서의 제안 이유에는 경제성 과소평가 의혹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가 적시되어 있고, 안전성·주민수용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회 감사요구 요지』

-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 54.4% 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 지역수용성 및 '09년 이전 한수원의 투자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2-2.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별건 조사 여부

### <청구 요지>

-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감사관이 '17년 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없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바
- 사전 고지 없이 별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 사무규칙에 위반

### <검토 결과>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점검」 감사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월성1호기 폐쇄 시기 결정'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감사 중 백운규 전 장관에게 동 계획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것일 뿐 위 계획 자체의 당부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2-3. 강압적 조사 등 감사과정의 위법·부당한 조사 여부

---

### <청구 요지>

#### 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 결론에 끼워 맞췄는지 여부

-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며 친원자력 인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한수원 사외이사 등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조사

#### ②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위법·부당한 조사 여부

- 감사과정에서 피감사자들을 압박, 모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에 유리한 진술만 기록하는 등 문답서를 조작하였으며, 10번 이상 출석요구, 12시간 이상 조사 등으로 진술을 강요하여 친절, 공정의무 위반

#### ③ 영상녹화 가능 사실 미고지의 위법·부당 여부

- 감사원 사무규칙 제10조 제4항에는 출석, 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인권침해적 감사를 숨기기 위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화 없이 강압적으로 조사

#### ④ 회계법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의 위법·부당 여부

- 감사원은 '20. 2. 12. 사적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규정을 만들고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서 민간 회계법인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 임의제출이더라도 강압적으로 포렌식을 실시하였다면 위법, 부당한 감사에 해당

---

### <검토 결과>

시민단체 등은 '20. 11. 12. 감사원장과 월성1호기 감사 관련 감사관들을 직권 남용,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